

제 194회 임시회
2001. 11. 8 (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1. 11. 8 (목)

교육사회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 2001년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14876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개정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골자는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과
 - 근로기준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본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부칙 제1항 중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내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 점유율은 교원이 51.7%, 일반직 공무원은 30.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4,651명중 여성 교원이 2,699명으로 5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교원과 일반직을 합산하면 47%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가임여성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으로

○ 출산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과 이에 따른 대행자 지정 등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제반사항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